

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

제1조 적용범위

-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이하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조 이자

-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 익일(이하 ‘원가일’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 다만, 당좌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, 은행에서 정하는 예금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 1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
 2. 저축예금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 금요일
 3. 자유저축예금,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 금요일
- ② 제①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비율로 셈한다.

제3조 거래중지계좌

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① 예금잔액이 10,000원 미만이며,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- ② 예금잔액이 10,000원 이상 50,000원 미만이며,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- ③ 예금잔액이 50,000원 이상 100,000원 미만이며,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
제4조 은행제공 수표 .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

-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.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하며, 1,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(발행일, 지급기일, 발행금액 등)을 금융결제원의 어음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제 ①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. 다만, 거래처가 요청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 거래제한

-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.
- ② 거래처는 제4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거래처가 은행(다른 은행 포함)과 직접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.
- ③ 통장이 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’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 수표.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

- ① 은행은 제4조 제①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.
-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. 다만,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
- ③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.

제7조 지급특례

- ① 제6조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.
 1. 각종 이자, 보증료, 수수료
 2. 수입어음 원금, 수출어음 부도대전
 3.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
 4.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

제8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

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.

제9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

- ① 은행은 당좌예금.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(대출한도 포함)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-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수표.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

- 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어음.수표의 지급사무

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.

1.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,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
 2.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.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(다만,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
 3.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①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
 4. "지시금지"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
- ② 제①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.

제11조 대리인과의 거래

-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.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은행은 제①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 「신용정보 관리규약」 상 신용거래 정보중 연체정보 ·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· 부도정보 · 관련인 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할 수 있다.

제12조 당좌.가계당좌예금 계약의 해지

- ①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은행은 거래처가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 상 신용거래 정보중 연체정보 ·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· 부도정보 · 관련인 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고, 은행이 정한 당좌, 가계당좌예금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 이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한다.

제13조 당좌.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

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4조 당좌예금 거래보증금

-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(이하 '보증금'이라 한다)을 은행에 별단예금

으로 예치해야 한다.

- ② 은행이 제①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,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거래처에게 돌려 준다.
-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①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변제로 총당한다.
- ④ 은행은 제③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·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다. 다만,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 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준다.
- ⑤ 제④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.